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함(안 제5조)
- 라. 광범위한 금연구역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7조)
- 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제3항

제9조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11. 30. ~ 2012.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2013. 02. 07.)와 심의 결과 원안 의결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평창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평창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평창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제4항에 따른 금연 시설이외의 장소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평창군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제9조(과태료)업무를 수행 하는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1)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6개월 후 시행됨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조례 제정에 따른 군비부담 소요비용을 추계한다.

(2)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은 이백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공원(9개소),학교정화구역(33개소), 버스정류소(174곳)

- (3)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규모로 10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4) 시행 최초 1년인 2014년도에는 금연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수렴등 준비기간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비용은 제외하고 교육 및 홍보 소요비용만 추계한다.
- (5) 금연홍보관 설치 및 민간단체 지원, 위탁비에 대하여는 기관선정이나 수요에 대한 조사가 없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 (6) 지방자치단체 보조의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20:80)으로 추진한다.
- (7)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는 재질과 규모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으나 원주시 금연공원 표지판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추계한다.
- (8) 금연구역내 흡연예방 점검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기준으로 연간 5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 나. 추계 결과

- 본 조례안에 따른 금연구역을 군에서 10개소를 지정하는 경우 제도 시행 최초 5년간 칠천구백오십만원이 소요되고,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지원에 칠천구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출기초(1년 단위)>

-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 1,200천원 × 10개 = 1,200만원
-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 100천원 × 10개 = 100만원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점검 : 5명 × 50천원 × 50일 =1,250천원
- 흡연예방교육(학교 등) 33개교 × 10만원 = 330만원

- 이번 비용추계서에는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이나 민간위탁,홍보관설치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에 서 제외하였으므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100%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채 정 희
연락처	(033) 330 -489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b>세 입</b>							
<b>세 출</b>		3,300	28,800	15,800	15,800	15,800	79,500
	금연구역 표지판제작	-	12,000	-	-	-	12,000
	금연구역 홍보·점검반운영	-	12,500	12,500	12,500	12,500	50,000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	-	1,000	-	-	-	1,000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b>재원 조달</b>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3,300	28,800	15,800	15,800	15,800	79,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